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941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다29419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1 자 2019재나78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나5148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52853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A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B

판결선고 2021. 7. 15.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재나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 부분을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8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